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연 월 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매시 경비를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저공해 운송수단 전환의 안정된 보급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유도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문구 삭제, 조문번호 재정비 등 반영(안 제10조의5호, 제79조의15~19호, 제124조의12제3항제3호)

나. 법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에 따라 구분함(안 제79조의4호제1항)

1) 현행 시행규칙 제79조의4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으로 현행 유지하되,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 자가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5년으로 신설함

2) 의무운행 기간이 ‘2년’과 ‘5년’으로 구분됨에 따라 지원금액 회수요율을 추가함(안 제79조의4호제2항 [별표21의2])

다. 법령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초과분의 이월·거래 가능기간을 명시하여 신설함(안 제79조의1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염화불화탄소(CFCs, Chlorofluorocarbons)
2.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Hydrochlorofluorocarbons)
3. 수소불화탄소(HFCs, Hydrofluorocarbons)

제79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 자가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무운행 기간의 범위를 5년으로 한다.

제79조의14부터 제79조의18까지를 각각 제79조의15부터 제79조의19까지로 하고, 제7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의 보급실적의 이월·거래기간) 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24조의12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 자가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제79조의4 제2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text{적용기간} = (\text{시·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text{구조변경검사 완료일}) / 30\text{일}$$

2. 개별 기준

가. 의무운행 기간 2년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나. 의무운행 기간 5년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5%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5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40%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30%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2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 다. 1. <u>염화불화탄소</u> 2. <u>수소염화불화탄소</u>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u>수소불화탄소</u> 4. (생 략)	제10조의5(냉매) ----- ----- ----- --. 1. <u>염화불화탄소(CFCs, Chlorof luorocarbons)</u> 2. <u>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Hydrochlorofluorocarbons)</u> 3. <u>수소불화탄소(HFCs, Hydrofl uorocarbons)</u> 4. (현행과 같음)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 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 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신 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관리) ① ----- ----- ----- ----- ----- 다만, 법 제58조제3 항제1호의 자가 저공해자동차 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무운행 기간의 범위를 5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실적의 이월·거래기간) 법 제58 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u>제79조의14</u> ~ <u>제79조의18</u> (생략)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② (생략) ③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2. (생략) 3. <u>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u> ④ (생략)	<u>정하는 기간</u>”이란 3년을 말한다. <u>제79조의15</u> ~ <u>제79조의19</u> (현행 제79조의14부터 제79조의18까지와 같음)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현행과 같음)
---	---